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007호
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공공임대주택 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소유자의 편법입주 방지를 위해 소득·자산요건 초과자에 대한 재계약 예외허용 기준을 개선하고,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영구·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예외허용 기준 개선(안 93조, 제94조)

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시 초과할 수 있는 소득·자산 요건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

나.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기준 마련(안 제 94조의4 신설)

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을

완화하여 모집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공공주택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
- 팩스 : 044-201-566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공

주택정책과(044-201-4580, 044-201-45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